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의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보고) 삭제

나. 조항 삭제에 따라 제5항의 중기중앙회의 주무관청 보고와 관련한 준용조항 문구 수정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 (수정) 제1항을 준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11.1.~ 12.14) 추진중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① 조 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 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삭제>
②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적 계약 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삭제>

<u>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⑤ <u>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u>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삭제> ② <u>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u>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업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204-7432